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제안경위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제출자	의안명
제434호	김재진 의원 외 7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35호	김재진 의원 외 6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나. 제출일자 : 2021년 12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여비의 지급구분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3)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2) 근무지 내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여비지급일, 여비지급절차,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림.

○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 일괄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계급별 여비의 지급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5조는 거짓 출장신청 등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 출장이거나 12킬로 미만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규정하고,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근무지 내 출장여비의 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비 지급일, 지급 절차,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우리 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